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9676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5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1626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제1심판결 별지 1 도면 표시 (가)부분 85.3㎡[이하 '(가)부분'이라 한다]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되 (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이후 그 관계가 전 소유자들을 거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 명의신탁관계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가)부분에 관하여 피고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이 이전을 명하는 피고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 중 (가)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이하 '환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병기하였으나, 판결이유에서 위와 같이 병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병기된 두 지분의 크기가 동일

한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한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주문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인지, 환산 지분이라면 (가)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각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상호간의 관계도 명확치 아니하여, 피고를 상대로 일부 중첩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 서로 다른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고 그 주문에 따른 등기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어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약 환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